

볼셰비키의 노동규율화 정책(1918-1920)

윤 용 선*

I. 머리말

장기간의 전쟁, 혁명, 내전, 서구열강의 간섭, 경제붕쇄 등으로 인해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제는 혁명직후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소비에트 러시아 경제의 위기는 산업노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요인, 즉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의 감소에 의해 야기되었다. 구 소련의 경제사가인 스트루밀린(С. Г. Струмилин), 러시아 전기화를 위한 국가위원회(ГОЭЛРО), 중앙통계청(ЦСУ) 등이 내전 말기에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러시아 인구는 1억 6천 6백만 명이었으며, 이중 17-50세에 있는 노동 가능한 인구는 7천 7백만 정도였다. 그러나 1920년에 16-50세의 인구는 65개 구베르니아에서 5천 7백만에 불과했다. 스트루밀린에 따르면, 16-49세의 연령층에 속하는 1천 4백 5십만 명이 1914-20년 사이에 전쟁과 전염병에 의해 사망했다. 그밖에 1920년까지 노동 가능한 연령에 속하는 인구 중 약 4백 4십만 명의 상이군인이 발생했다. 이로써 소비에트 러시아는 1913-1920년에 약 1천 9백만 명의 노동인구를 상실했다.¹⁾

소비에트 산업의 위기는 산업노동자의 절대 숫자가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것과는 관련이 있었다. 이미 10월 혁명 이전부터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16-17년의 노동생산성은 전체적으로 보아 1913년의 약 71% 수준에 불과했다. 그후 공업의 노동생산성은 계속 떨어졌다. 공장노동의 생산성은 10월 혁명,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개편, 내전 등으로 인해 1918년에 1913년의 44%, 1919년에는 20.2%, 1920년에 24.3%로 하락했다.²⁾

* 한국 외국어 대학교 강사

1) Баевский, Д. 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иод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М., 1957, 84쪽 이하.

2) Прокопович, С. Н., *Очерки хозяйства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Berlin, 1923, 21쪽 이하.

불세비키는 산업생산과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여금 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생산성 장려제도는 당시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불세비키는 상여금 제도와 더불어 노동규율의 강화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중앙 노조소비에트 의장인 톰스키는 1918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자는 받는 것보다 적게, 생존을 위한 최저보다 적게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인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국가 연금생활자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오래 지속될 수 없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1918년 노동절에는 서구와 달리 “노동규율을 강화하자!”라는 구호가 노동해방 구호를 대신했다.⁴⁾

이 글에서는 불세비키가 내전시기에 경제위기에 직면해 산업부문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했던 노동규율의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노동규율의 강화와 관련해 취해진 각종 입법조치, 당 지도부의 입장, 각 기관의 활동과 —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이 언급될 것이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노동규율화 정책의 배경이나 평가보다는 내용의 소개가 주로 언급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노동자-농민 국가”에서 초기에 실시된 노동정책의 실상과 이어서 1921년 초에 발생한 크론슈타트 노동자 봉기와 같은 국가와 노동자의 대립의 배경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글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한 셈이다.

II. “노동의 군사화”

“노동의 군사화(милитаризация труда)”란 군사조직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규율과 조직원칙에 의거해 노동력을 조직하고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전시적인 노동정책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불세비키는 내전이 시작된 이후인 1918년 말부터 이미 “노동의 군사화”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군사화” 정책은 주로 산업생산의 관리를 단일한 명령체계로 재조직하는 것으로 이해되

3)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вестник*, 1918, No. 7-8, 7쪽.

4) Баевский, Д. А., *Рабочий класс в первые год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1917-1921 гг.)*, М., 1974. 280쪽.

었다. 그 후 내전이 종료되고 경제재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1920년에 가서야 “군사화” 정책은 트로츠키에 의해 수송체계의 복구작업에 적용되면서 노동력의 조직과 노동윤리에 영향을 미쳤다.⁵⁾

1. 생산조직의 중앙집중화

“노동의 군사화” 정책은 내전과 관련해 초기에는 주로 군수산업 부문의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군수산업에서 가장 많은 조직을 갖고 있던 철강노조는 초기부터 이러한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철강노조 중앙위는 “노동의 군사화”가 언급되기 시작하던 1918년 12월에 일련의 기업에서 생산노동을 군사화할 것을 결의했다.⁶⁾ 먼저 “군사화”는 산업을 군대와 유사하게 재조직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기계제작 분야에서는 관련 대기업들을 단일한 명령체제 하에 두기 위해 하나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송, 원자재 및 연료생산, 제련 및 제철 등을 담당하던 대기업들을 기계제작 업체들과 함께 국영 기계제작 기업연합(ГОМЗ)으로 합병시켰다. 중기업의 합병은 1919년에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10개 기계제작 중기업은 하나의 관리체제로 합쳐졌다.⁷⁾ 섬유산업에서도 생산 및 위치와 관련해 기업을 생산그룹(Кусты)으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방직, 방직, 염색 업체가 하나의 중앙 관리기관을 갖는 기업연합을 이루었다. 이러한 산업생산의 중앙집중화는 지속적이고 급속하게 이루어져, 1919년 말에 최고 인민경제 소비에트에는 모든 산업부문의 2,966개 기업을 관리하는 48개의 중추부(또는 중앙산업관리국,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가 설치되었다.⁸⁾

-
- 5) “노동의 군사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Sorenson, Jay B., *The Life and Death of Soviet Trade Unionism 1917-1928*. New York, 1969. Erickson, John, “Some Military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Militia Army” Controversy, 1919-1920”, in: Abramsky/Williams (Hrgg.), *Essays in Honour of E. H. Carr*. London-Basingstoke 1974. 204-228쪽. Носач, В. И., *Профсоюзы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в годы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1918-1920*. М., 1978.
- 6)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вестник*, 1919, № 1, с. 45.
- 7) *Металлист*, 1919, № 12, 15쪽.
- 8) Баевский, “Роль совнархоз и профсоюзов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в 1917-1920 гг.”,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1959, № 64, 23쪽.

이처럼 산업생산의 관리가 중앙집중화된 것은 내전이라는 전시상황 이외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상관이 있었다. 볼셰비키는 1918년 6월에 실시된 대기업의 국유화 조치이후 계획경제에 적합하게 경제구조의 개편을 시도했으며, 이는 최고 인민경제 소비에트가 중추부기구의 방식에 따라 재편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유기적 통합은 계획경제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결정구조가 중앙집중화된 것은 당시에 볼셰비키를 지배하고 있던 군사적 조직원칙과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노동군(Трудармия)

내전은 1919년 말부터 볼셰비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1920년 초에는 볼셰비키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졌다. 볼셰비키 정권은 일단 내전의 위기를 벗어나자 파탄지경에 이른 국가경제를 재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교통망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마비되었고, 원자재 확보, 연료채굴, 식량조달, 산업생산 등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트로츠키는 1920년 1월 12일에 개최된 중앙노조 소비에트의 볼셰비키 분파회의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산업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진단했다.⁹⁾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산업부문의 생산량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산업생산의 변화 (단위: 백만 푸드-пуд¹⁰⁾)

산업부문	1913	1920	1913년(100%) 대비 1920년의생산량(%)
석탄	1,738	467	26.9
석유	564	234	41.5
철광	597	10.1	1.7
제철	214.2	12.2	5.7
면화	16	0.8	5

자료: Kritzman, Leo N., *Die heroische Periode der großen russischen Revolution*. Frankfurt a. M., 1971. 233쪽.

9) Киселев, А. Ф., *Профсоюзы и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Дискусии 1917-1920 гг.* М., 1991. 155쪽.

10) 1 푸드는 16.38 kg.

이처럼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산업생산의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자, 불세비키의 노동정책은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시에 군수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보였던 “노동의 군사화”는 1920년에 불세비키 노동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열악한 산업시설 하에서 숙련되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된 노동자 계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불세비키 정권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세비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전을 통해 습득하게 된 군사문화를 산업노동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정책의 주창자인 트로츠키는 이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는 전선에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임무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수 천명의 목숨이 바로 부대장(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군을 지휘했다)의 손, 그의 정확성과 단호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명령수행에 있어 질서, 책임, 정확성을 전선에서 배웠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경제에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¹¹⁾

레닌 역시 트로츠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20년 1월에 개최된 최고 인민경제 소비에트 3차 대회에서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노동의 군사적 조직에서 찾았다. “우리의 조직을 최대한 빠르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노동군대를 창설해야만 한다. 나는 내전이 끝나고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역량을 ... 노동전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탈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¹²⁾ 레닌은 여기서 “군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운리의 엄격한 군사적 규율화와 산업생산에서도 군대처럼 중앙에서 하달되는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닌은 군대와 유사한 단일화된 비민주적인 결정구조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3차 노조대회에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구성원은 실천에 있어 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통일된 의지는 구호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의지의 통일은 전쟁에서 나타나는데, 전체의 이해보다 ... 자신의 이해를 중시하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로 간주하고 총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총살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노동자의 도덕적 의식에 의해 정당화된다.”¹³⁾ 이처럼 레닌과 트로츠키

11) *Russische Korrespondenz*, Jg.1(1920), No. 8-9, 15쪽.

12) *Lenin Werke*, Bd. 30, 301-302쪽.

13) *Трет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6-13 апреля 1920 г. М.*,

는 노동규율의 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양자는 노동자들이 전선에서 습득한 군인의 행동양식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노동규율을 확립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트로츠키의 “노동의 군사화” 안은 1920년 초까지도 레닌을 비롯한 당 지도부로부터 비판받지 않았다. 트로츠키는 또한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수송체제를 군사조직화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수송체제는 내전 말기에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가동이 불가능한 기관차와 열차는 19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920년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1917년 10월에 기관차의 경우 약 56%, 열차의 경우 24%가 운행을 할 수 없었다. 내전 당시에 전쟁 인민위원부장으로 있던 트로츠키는 동시에 수송 인민위원부장을 겸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 철도 노동자들은 군사적 원칙에 의거해 완전히 재조직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철도노조와 별도로 정치부가 설치되었으며, 1920년 8월에는 노조, 인민위원부, 정치부를 통합해 중앙수송위원회(Центр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Транспорта)가 설치되었다. 수송부문의 모든 결정권은 수송 중앙위로 집중되었으며, 중앙위는 이러한 권한에 근거해 거의 모든 사항을 지시했다. 수송체제는 이러한 군사적인 조직구조와 관리 덕분에 다시 가동했다. 그러나 수송 중앙위는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인해 1920년 가을부터 레닌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⁵⁾

1919년 말부터 내전이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날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

1920. 26쪽.

- 14) 이와 반대로 레닌과 트로츠키는 노조의 역할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했다. 레닌은 이와 관련해 “(그와 트로츠키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차이는 대중을 어떻게 확보하며,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하며, 이들과 어떻게 연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Lenin Werke*, Bd.32, 6쪽) 레닌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노조의 중심과제라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트로츠키는 당시 아직 좌파에 속했던 부하린과 함께 노조를 생산부문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구로 보았으며, 따라서 노조를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노조의 국가화”를 둘러싼 논쟁은 10차 당 대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Десятый съезд РКП(б)*, 679쪽 참고). 이처럼 레닌은 단지 노동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만 트로츠키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 15) Daniels, R. V., *Das Gewissen der Revolution. Kommunistische Opposition in Sowjetrußland*. Köln u. Berlin, 1962, 154쪽.

작하자, 적군(赤軍)을 경제재건에 투입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전선에 투입되었던 산업노동력이 다시 산업지역으로 귀환해야 하는데 수송체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되자, 당 지도부는 적군을 주둔지 인근지역에서 산업생산에 투입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연료와 원자재의 채굴, 수송체계의 재건에 주력했다. 비상노동·국방 소비에트(СТО: Совет труда и обороны)는 1920년 1월에 우랄에 주둔하던 제3군 전체를 제1노동군(Трудармия)으로 재조직했다. 이어서 불가 지역에서는 제2노동군이 창설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알렉산드로프 가이와 엠바간을 연결하는 철도부설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밖에 우크라이나, 코카서스, 페트로그라드 등에서 노동군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노동군은 중앙수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920년 말에 비효율적인 운용과 지역경제기관과 분리된 채 배타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 지도부의 비판을 받게 되어 해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⁶⁾

노동군은 반드시 적군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문을 닫은 기업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군으로 조직되었다. 비상노동·국방 소비에트는 1920년 3월 5일에 “폐쇄된 기업의 노동자의 등록과 활용에 관한 지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기업은 2주 안에 지역 노동위원회에 종업원의 수와 공장가동 중지시기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노동군에 편입된 노동자들은 위원회가 부과한 새로운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¹⁷⁾

트로츠키는 “노동의 군사화” 정책에서 노동자와 직접 접촉하는 노조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1920년 초에 개최된 제9차 당 대회에서 노조조직에서 군사적 방법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군사화는 노조의 군사화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군사화는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의 병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체제의 존속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병사가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탈영병이 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누가 이를 감독하는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16) 노동군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Баевский, Д. 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иод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105쪽 이하; Гимпельсон, Е. Г., “Военный коммунизм”. *Политика, практика, идеология*. М., 1973, 95쪽 이하; Scheibert, P., *Lenin an der Macht. Das russische Volk in der Revolution 1918-1922*, Weinheim, 1984. 312쪽 이하.

17)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7, 314-316쪽.

노동조합은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며, 이는 노동자 계급의 군사화이다.”¹⁸⁾ 한편 당의 이러한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노조측에서는 당이 부여한 역할을 즉각 확인했다. “노동의 군사화” 안이 주목받던 1920년 봄에 개최된 제3차 노조대회는 당의 지도노선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레닌은 노동규율의 강화와 관련해 제3차 인민경제 소비에트 대회에서 행한 연설과 같은 내용을 3차 노조대회에서도 반복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노조대회는 중앙 노조 소비에트 볼셰비키 분과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1. 소비에트 러시아의 모든 노동자와 근로자는 국가의 경제적 파탄에 대해 일사분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 모든 노동조합 조직은 아래부터 위까지 엄격한 노동규율을 도입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과 노동자 독재의 유지와 확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공산당이 지도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 대중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여는 더욱 힘차게 추진되어야 한다.¹⁹⁾

노조의 역할이 강조되자, 개별 노조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과제를 설정했다. 1920년 봄에 개최된 제3차 철강노조대회는 노조의 과제를 과거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엄격한 노동윤리의 확립과 노동규율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결의했다. “노조는 비규율성, 태만, 노동력의 범죄적인 분산 등에 대해 타협 없는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노조는 동지법정(товарищеский суд)을 설치해야 하며, 동지법정은 노동규율의 실천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엄격한 책임추궁을 위해 모든 위반을 적발하여 국가 법정에 이를 고발하게 된다. 규율화된 노동자가 중요한 기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노동규율의 원칙(정시 출근, 작업도구와 원자재의 조심스러운 취급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조의 최하부 조직인 공장위원회(фабзавком)는 노동자 대중의 규율화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공장위원회는 감시자를 파견해 작업장에서 노동규율의 실

18) *Девятый съезд РКП(б)*, 94쪽. 트로츠키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새로운 노조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의 지도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노조를 노동자 동원에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점진적인 국가의 소멸”을 성급하게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레닌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19) *Трет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28쪽.

시여부를 감독해야 했다. 위원회의 간부회의는 선동부터 위반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공장위원회는 귀감이 될만한 생산실적을 올림으로써 일반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를 자극하는 소위 “의식 있는” 노동자를 발굴해야 했다. 그밖에 공장위원회는 동지법정의 설치를 통해 노동규율의 위반에 대한 처벌체계를 마련해야 했다.²⁰⁾

“노동의 군사화”는 노동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의 조직”을 담당 한 인민경제 소비에트 산하 중추부(중앙생산관리국)로 확대되었다. 1920년 3월 17일자 노동·국방 소비에트(СТО) 지령은 최고 인민경제 소비에트 철강부에도 군사적인 조직원칙을 적용하도록 명했다.²¹⁾ 그로 인해 이미 1918년 말부터 시작된 산업의 관리에 있어서 중추부의 독단적인 활동은 글라브키즘(Гла-вкисм)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되었다.

III. 노동의 규율화

1. 노동수첩(трудова я книжка)

불세비키는 노동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노동수첩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기업장과 관련한 법적 규정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노동 가능한 연령의 인민은 노조 임금위원회에 등록한 후 노동수첩을 발급 받아야 했다. 모든 근로자는 출근 시 직장에 노동수첩을 제시해야 했다. 직장은 기업장의 사본을 보관하며, 근로자의 노동과 임금지불에 관한 사항은 모두 노동수첩에 기록되었다. 또한 노동수첩에는 모든 휴가, 근무태만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벌사항 등이 기록되었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노동수첩을 발급 받을 경우, 이전에 기록되었던 모든 사항이 새로운 수첩에 옮겨져 기록되었다.²²⁾

중앙 노조소비에트는 이미 1918년 4월에 노동규율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시에 노조활동은 주로 생산성의 규정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위

20) *Металлист*, 1920, No. 4-5, 23쪽, 26쪽.

21)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7, 338-339쪽.

22)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4, 188-189쪽.

해 개별 노조는 산하에 관련 부서를 설치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18년 6월 27일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4차 노조-공장위원회 회의는 결의문에서 노조규율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선언했다.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 노동과 관련해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절도, 근무태만, 불성실한 과제수행과의 투쟁”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동규율의 강화가 아직 선원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처벌에 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없었다.²⁴⁾

내전 이후에 경제의 재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자, 노동거부 및 태만에 대한 처벌이 구체화 되었다. 인민위원회 소비에트(совнарком)는 1920년 4월 27일에 노동자의 임의적인 결근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결근은 먼저 임금삭감을 통해 처벌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한 달에 하루 결근시 월 상여금의 15%가 삭감되며, 2일 결근의 경우 25%, 3일 결근의 경우 60%가 삭감된다. 게다가 결근일은 이러한 상여금 삭감과 별도로 나중에 근무시간 외 추가노동이나 공휴일 노동을 통해 보충되어야 했다. 결근일이 월 3일을 넘을 경우, 해당자는 사보타지를 의도하거나 행한 자로 간주되어 규율법정로 넘겨지도록 했다.²⁵⁾

이어서 노동기피에 관해서도 보다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인민위원회 소비에트는 5월 4일에 “노동기피 및 관련 대처기관에 관한 지령”을 내렸다. 지령은 노동기피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노조에 노동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지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이는 부르주아 출신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겨냥해 마련되었다 —, 일반노동의무에 의거해 부과된 노동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되었다.

노동기피의 사례

- 노동의무를 공포하고 시행하는 기관이 관장하는 등록과 파악을 기피하는 행위.
- 등록의무가 있는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전문기술인력 등이 전문지식을 숨기는 행위. 관련자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 노동동원령을 받았거나 노동 인민위원회 산하기관에 의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과된 노동을 기피하는 행위.

23)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вестник*, 1918, No. 5-6, 11-12쪽, *Металлист(М)*, 1918, No. 1, 10쪽.

24) *Текстильщик*, 1918, No. 5-6, 13쪽 이하.

25)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8, 98-99쪽.

- 공문서 위조, 허위 노동신고, 허위 과제보고, 허위 질병신고 등을 통한 노동의무의 기피.
- 해고나 직위해제 이후에 노동력 관리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행위.²⁶⁾

그밖에 질병휴가는 보다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흔히 질병을 가장해 노동의 강제동원을 기피하자, 노동·국방 소비에트는 1920년 3월 10일에 철도부문의 노동기피에 관한 지령에서 병가증명서의 불법적인 발행 및 사용, 허위 질병신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교통 인민위원부 산하기관에게 철도 중앙노조의 참여 하에 이를 감독할 기관을 조직하라는 명령이 함께 하달되었다.²⁷⁾ 이어서 인민위원부 소비에트는 4월 27일에 병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가를 얻기 위해서 “질병 증명서(больничный листок)”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보건 인민위원부의 지역기관들은 역시 지령에 의거해 질병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포했다. 장차 병가의 적법성은 의사들로 이루어진 감독위원회에서 심사되도록 했다.²⁸⁾

2. 규율·동지법정(дисциплинарно-товарищеский суд)

노동조합은 산업생산에서 노동의 조직에 책임이 있는 기구로서 내전기간 동안에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생산증대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노조지도부는 성과급이라든가 보너스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해지자, 중앙 노조 소비에트에서는 철도노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칙에 입각한 규율법정의 구성문제가 제기되었다.”²⁹⁾

일부 노조에서는 동지법정이 이미 1918년에 조직되었다. 섬유노조의 1918년 정관을 보면, “공장위원회는 노동규율의 준수를 위해 동지법정에 의해 규정된 벌금을 임금계약 규정에 따라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³⁰⁾라는 동지법정에 관한

26)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8, 147-148쪽.

27)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7, 325쪽.

28)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8, 99쪽.

29) Отчёт ВЦСПС за 1919, 130쪽.

30) Текстильщик, 1918, №5-6, 15쪽.

언급이 있다. 철강노조 역시 1919년 정관에서 동지법정의 설치를 규정했다. “공장위원회는 프롤레타리아적 규율을 공장에서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지법정을 조직해야 한다.”³¹⁾ 인용문에서 법정의 기능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에는 아직 법정의 권한이나 활동이 미미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동지법정의 조직에 있어서 처음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고 인민경제 소비에트 지도부는 레닌도 참여한 1918년 3월 27일에 개최된 한 회의에서 중앙 노조 소비에트에게 노동규율에 관한 지침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중앙 노조 소비에트는 4월 3일에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안은 노동 인민위원부 2차 대회와 인민경제 소비에트 1차 대회에서 추인되었다.³²⁾ 나중에 인민위원부 소비에트는 1919년 11월 14일자 지령에서 “동지·규율 법정”을 노조 산하에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정이 각 지역노조(губерния, округ, район)에 설치되었다. 또한 법정은 개별 작업장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법정은 대개 공장경영진, 노조지도부, 작업장의 노조 총회를 대표하는 세 명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다.³³⁾

법정의 설치와 관련한 인민위원부 소비에트의 안에 관해 노조 내부에서는 견해차이가 노출되었다. 법정이 단순히 국가 행정기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권력이 배제된 순수한 동지법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노동자의 조직인 노조가 노동자의 처벌에 참여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양자간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앙 노조 소비에트의 볼셰비키 분파에 의해 1919년 10월 29일에 열린 한 회의에서, 최고 인민경제 소비에트 의장인 리이코프는 동지법정에 관한 인민위원부 소비에트 안은 법정이 완전히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로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지법정이 노동자와 기타 조직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노동자 조직이기를 원했다. 반면에 법정이 노조 산하에 설치되면, 노동자와 노조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의 회의는 인민위원부 소비에트 안을 통과시켰다.³⁴⁾

31) 철강노조 산하 공장위원회의 정관, in: ГАРФ ф.5451, оп.3, д.129.

32) Баевский, *рабочий класс во первые год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278쪽 이하.

33)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6, 274쪽.

34) Киселев, 149쪽 이하.

1920년 5월 27일에 개최된 모스크바 주(州, 구베르니야) 소비에트 총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주에 설치하기로 계획한 40개 법정 — 25개소는 주 소비에트, 15개소는 군(郡, 오크루그) 노조 소비에트 — 가운데 22개소가 설치되었다.³⁵⁾ 1920년 말에는 주 생산노조 산하에 전부 20개소가 조직되었다 — 5월까지 3개소, 6-8월에 8개소, 9-12월에 9개소. 같은 시기에 페트로그라드에는 22개소, 트베르에 9개소, 펜자에 17개소, 이마노보-보즈네센스크에 9개소, 예카테린부르크에 44개소가 설치되었다.³⁶⁾

1919년 11월 14일자 인민위원부 소비에트의 지령에 따라,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노동 인민위원부와 중앙 노조 소비에트에 의해 마련되었다. 공장경영진, 노조, 노조산하기관 등은 인민위원부 소비에트의 지령에 따라 노동기피에 대한 고발권을 갖게 되었다. 노조회원 역시 공장위원회를 통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다. 피고에게는 항소권이 주어졌다. 항소의 경우, 주에 있는 노동인민위원부, 노조소비에트, 인민경제 소비에트의 대표 3인으로 구성되는 주 법정이 최종판결을 내렸다.³⁷⁾

노조는 노동규율화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3차 노조대회는 노동규율의 강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³⁸⁾ 이어서 1920년 여름에는 중앙 노조 소비에트 산하 노동규정부가 규율 위반시 처벌에 관한 노동규율법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 시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인민위원부 소비에트에 제출되었다.³⁹⁾ 1920년 10월 20일자 중앙 노조소비에트의 지령은 모든 노조기관에게 노동기피자에 대한 투쟁과 이를 담당할 감시기관을 조직하도록 명했다. 기관장은 중앙 노조 소비에트 경제부 부장이 맡았다.⁴⁰⁾

개별 기업에서는 공장위원회에 동지법정이 설치되었다. 법정은 중앙 노조 소비에트 지령에 따라 오직 총회를 통해서만 선출될 수 있었다. 법정 구성원의 수는 공장노동자의 수에 비례해 정해졌다 — 노동자 100명 미만의 작업장에는 3명, 100-500명은 5명, 500-1,000명은 7명,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작업장

35) *Russische Korrespondenz*, Jg. 1(1920), Nr.10, 110쪽.

36) Гимпельсон, *советский рабочий класс 1918-1920 гг.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М., 1974. 193-194쪽.

37)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6, 274쪽.

38) *Трет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108쪽.

39) *Отчёт ВЦСПС. Март 1920-апрель 1921*. 41쪽.

40) *Отчёт ВЦСПС. Март 1920-апрель 1921*. 41쪽.

은 9명.⁴¹⁾ 철강 산업에서는 1920년부터 법정이 공장경영진, 공장위원회, 노동자 총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⁴²⁾ 1,000명 이상이 일하는 작업장에서는 법정 외에도 공장위원회에 의해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각 부서에 한 명씩 임명되었다. 이들은 개별 부서에서 노동규율의 실시여부를 감시했다. 이들은 공장위원회의 대표로서 사소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된 임무는 무엇보다도 태만하거나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자들을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었다. 법정이 허락할 경우, 이들은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도 있었다.⁴³⁾ 당시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던 하부 노조간부들의 낮은 의식수준과 관료주의적 행태를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노동의 규율화는 노조의 조직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규율화는 노동과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조직의 활동에도 적용되었다. 그 결과 규율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노조활동 역시 규율화되었으며, 노조 내에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군사적 결정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해 1920년 9월 29일에 개최된 프리옥 군(郡)의 노조총회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회의는 모든 노조 책임자와 부서장들을 규율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주 노조 소비에트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되고 후자의 이념적 지도하에 활동하게 될 것이다.”⁴⁴⁾

3. 처벌내용

노동규율과 관련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위반자가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가 라는 점이다. 1918년 4월 3일에 발표된 중앙 노조 소비에트의 노동규율에 관한 결의문은 처벌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다만 위반자를 노조에서 제명시킨다고 말하고 있다.⁴⁵⁾ 1919년 전반까지도 노동태만에 대한 가장 가혹한 처벌은 해고였다. 1919년 1월 30일자 『프라브다』지는 『루스카야 마쉬나』라는 기계제작 공장의 4명의 노동태만자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41) ГАРФ, ф.5451, оп.3, д.385.

42) *Металлист*, 1920 г., №3, 6쪽.

43) *Металлист*, 1920 г. №8-9, 28쪽.

44) ГАРФ, ф.5451, оп.4, д.106.

45) *Металлист(М)*, 1918 г., №1, 10쪽.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두 명은 처벌노동을 거부하고 노동태만의 정도가 지나쳐 해고되었다. 나머지 두 명은 2일치 임금을 못받게 되었고 다시 노동규율을 위반시에는 해고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공장위원회가 내렸다.⁴⁶⁾ 툴라의 철강노조 역시 1919년에 노동태만에 대한 처벌로 결근한 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⁴⁷⁾ 프리옥 군(郡)의 철강노조는 한 달에 3일 결근시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식료품 배급권을 지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⁴⁸⁾ 철도원들의 경우에는 처벌로서 위반자를 다른 일에 투입시키는 조치를 취했다.⁴⁹⁾

그러나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었다. 노조는 노동태만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 노조 소비에트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1920년 4월 27일자 인민위원부 소비에트 지령은 ... 지방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지령이 실제로는 (처벌과 관련해) 지나치게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령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⁵⁰⁾ 중앙 노조 소비에트와 마찬가지로 1920년에 개최된 노동 인민위원부 회의 역시 인민위원부 소비에트의 지령이 강력하지 못하다고 보고 이 지령과 별도로 추가적인 통제방법의 도입을 촉구했다. 즉 정시 출근을 체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무작위 추출을 해 조사한 후 위반자에게 식료품과 주택배당에 있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⁵¹⁾ 페트로그라드 철강노조의 동지법정은 1920년 11월 1일에 공장에서 생산노동을 게을리 한 이유로 법정에 선 포포프(Ф. В. Попов) 사건을 다루었다. 법정은 피고에게 6개월간의 공민권박탈과 공장에서 1개월간 강제노동 할 것을 판결했다. 12월 12일에는 푸틸로프 조선소에서 지난 3개월간 49일을 결근한 마리우셰프(Ф. Е. Мариушев)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판결문은 피고를 해고하고 노동력 관리기관이 부과하는 강제노동에 처하도록 명했다.⁵²⁾

1919년 가을부터는 노동태만자와 관련해 수용소(концентрационный лагерь)

46) *Правда*, 1919년 1월 30일.

47) *Металлист*, 1919 г., №1, 17쪽.

48) *Металлист*, 1920 г., №8-9, 22쪽.

49)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вестник*, 1919 г., №2, 32쪽.

50) *Отчёт ВЦСПС*. Март 1920-апрель 1921. 41-42쪽.

51) *Russische Korrespondenz*, Jg.1(1920), Nr.17-18, 1060쪽.

52) *Гимпельсон, советский рабочий класс 1918-1920 гг.*, 192쪽 이하.

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급진적인 처벌방식을 두고 노조 내에서 견해차이가 드러났다. 1919년 10월 29일에 개최된 중앙 노조소비에트 볼셰비키 분과 회의에서 최고인민경제 소비에트 의장 리코프는 매우 급진적인 처벌내용을 담고 있는 인민위원부 소비에트의 노동규율에 관한 지령 초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부 회의참가들은 이러한 안을 환영한 반면, 일부는 처벌내용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처벌이 사회적 강제노동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밖에 몇몇 참가자들은 수용소의 목적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은 통과되었다.⁵³⁾ 결국 1919년 11월 14일자 인민위원부 소비에트의 지령은 노동규율을 수차례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수용소에 보내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⁵⁴⁾ 이어서 인민위원부 소비에트는 1920년 4월 20일자 지령에서 결근시 수행해야 하는 보충노동 — 주로 시간외 노동이나 휴일노동 — 을 거부할 경우에 위반자를 수용소에 수감한다는 지시를 내렸다.⁵⁵⁾ 노동 인민위원부 역시 노동태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1920년에 개최된 한 회의에서 모티레프(В. Е. Мотылев)라는 이름의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4. 근로하지 않는 분자들과 노동 태만자는 무조건 특별 노동대에 편입되어야 한다. 노동대는 두 그룹, 즉 징벌대(штрафной батальон)와 감시하에 있게 되는 노동대(трудоваго батальон)로 나뉘어진다. 징벌대에 편입된 사람은 병영생활을 하며, 노동대에 편입된 사람은 노동 중에만 감시를 받으며, 노동시간 외에는 자유가 된다.
15. 징벌대와 노동대는 조직상으로 행정부서 산하에 있게 되며 노동력 분배를 담당하는 부서에 의해 업무를 부과받는다. 징벌대와 노동대의 운영은 일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맡아야 한다.⁵⁶⁾

수용소를 조직하려는 계획은 결국 실행에 옮겨졌다. 바트카의 철강노조 2차 구역(라온)회의(1920년 7월 9일)에서 지역 규율법정의 활동이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은 7월까지 총 76명의 노동태만자를 적발했는데, 이들 중 34명은 공장 노조총회에서 비판받거나, 일시적인 임금삭감, 해고 등의 형태로

53) Киселев, 149쪽 이하.

54)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6, 272쪽.

55)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ом 8, 99쪽.

56) Russische Korrespondenz, Jg.1(1920), Jr.17-18, 1060쪽.

처벌되었다. 이들 중 두 명은 수용소에 수감된다는 판결을 받았다.⁵⁷⁾ 9월 초에는 로스토프에서 노동규율을 위반한 46명의 철도원이 노동대로 보내졌으며, 47명은 형벌대로 보내졌다.⁵⁸⁾ 모스크바에서는 1920년에 총 51명의 노동태만자가 수용소로 보내졌다.⁵⁹⁾

모스크바 주에서는 1920년에 20개 노조 동지법정이 총 5,182건의 노동규율 위반사례를 심의했다. 업종별로는 철강노동자 2,218명, 섬유노동자 340명, 의복노동자 962명, 피혁노동자 137명, 식료품산업 노동자 203명, 담배생산 노동자 205명, 건축노동자 46명, 수송 노동자 18명 등. 노동태만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근과 지각이 1,801건(55%), 근무태만 294건(9.1%), 근무지 이탈 76건(2.3%), 직권남용 16건(0.5%), 상부의 명령에 대한 저항 153건(4.7%), 내부규정 위반 247건(7.6%), 직원모욕 26건(0.8%), 절도 502건(15.3%), 임금규정 위반 11건(0.3%), 기타 147건(5.5%).⁶⁰⁾ 위반사례의 절대다수는 노동윤리와 관련이 있었다.

전체 피고 중 11.9%가 무죄로 판결되었다. 나머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처벌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판 602명, 일시적 피선거권 박탈 23명, 일시적인 시간외 노동 및 휴일노동 750명, 임금 및 보너스 삭감 157명, 식량배급 삭감 20명, 강제노동 398명, 직위강등 103명, 해고 91명, 수용소 51명, 그밖의 경우에는 경고조치 되었다.⁶¹⁾

이러한 강압적인 방식이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개별적인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노동자들이 물질적으로 매우 빈궁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노동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노동동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브이스코고르 구역의 철강노조의 보고서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1920년 5-6월 활동보고서는 엄격한 조치로 인해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물질생활의 해결만이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57) ГАРФ, ф.5469, оп.4, д.7.

58) Правда, 1920년 9월 4일자.

59) Гимпельсон, советский рабочий класс, 193쪽.

60) 위의 책.

61) 위의 책.

“노동규율이 도입되었다. 직장에서 근무태만과 음주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선동뿐만 아니라 해당자를 이들이 개선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노동에 투입해야 한다. 의식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의 군사화를 위한 모든 조치에 동의한다. 단지 불충분한 식사가 가끔 불만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보아 관련자를 처벌시설에 넘기는 것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엄격한 몇몇 조치들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생산성을 성공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식료품 및 신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⁶²⁾

앞서 살펴본 모스크바 주 소재 20개의 노조 동지법정이 1920년에 처리한 규율위반 사례 중 절도가 15.3%로 결근과 지각(55%)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빈곤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공장의 생산물이나 원자재를 훔치도록 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장 절도는 이미 1918년부터 크게 확산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하로프라는 이름의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들 중에는 혁명적 책임성이 결여된 동지들이 있다. 의식있는 노동자들은 절도에 대한 투쟁을 크게 강화해야 하며 천박한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⁶³⁾

적지 않은 노동자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결근을 하거나 아예 도시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당국은 1920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결근한 노동자들 중) “첫 번째 노동자는 감자를 사러 갔고, 두 번째 노동자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농촌으로 내려갔으며, 세 번째 노동자는 장화를 구하러 다니고 있다”, “연료배급표와 식량배급표를 받기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⁶⁴⁾ 1919-1920년에 각 주의 주요 도시에 거주했던 노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양의 식량으로 연명했다. 노동자들의 심각한 식량문제는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었다. 1919년 4월 13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에서 지노비예프는 페트로그라드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33%가 영양실조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고했다.⁶⁵⁾

노동자들의 의복문제 역시 식량문제 못지않게 심각했다. 철강노조는 1919년에 노동자들이 요구한 장화의 양에 불과 5%만을 공급했다. 우랄지역의 89,100명의 철강노동자들은 겨우 2,000켤레의 장화를 공급받았다. 그렇다고 노

62) ГАРФ, ф.5469, оп.4, л.52.

63) Киселев, 131쪽.

64) 위의 책, 146쪽.

65) Известия ЦК КПСС. 1989 г., No. 12, 142쪽 이하.

동자들이 암시장에서 의복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스크바의 경우 1920년 말에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1,074 루블이었는데, 암시장에서 면 양복이 한 벌이 35,000 루블, 작업복 한 벌이 12,000 루블을 호가했다.⁶⁶⁾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세비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미 1918년 말부터 노동규율의 강화를 추진했다. 소위 “글라브키즘”으로 표현되는 산업생산의 중앙집권적 관리와 군대식 조직, 일반기업에서 실시된 노동규율의 강화와 이에 대한 감시, 노동군의 조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취해진 여러 조치 — 임금삭감, 식량배급중지, 해고, 강제노동, 수용소 수감 등 — 등을 통해 불세비키 정권은 시급한 당면과제였던 산업생산의 재건에 주력했다. 경제와 행정에서도 군대조직과 마찬가지로 결정권을 단일화하고, 노동력을 군대와 유사하게 조직했던 이유는 갓 태어난 불세비키 정권의 사활을 결정했던 내전과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의 시급한 복구 때문이었다. 불세비키는 이러한 강압적인 노동정책을 내전이라는 전시상황에서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이 불세비키가 추구했던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물론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추론을 해본다면, 노조의 긍정적인 평가나 소비에트 경제의 회복속도를 고려 할 때 노동규율화 정책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의 규율화만을 통해 계획했던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 수송체계의 붕괴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어렵게 했으며, 낡은 생산시설 또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세비키는 경제의 재건을 위해 제3의 생산요소인 인간의 노동력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불세비키가 처음부터 노동의 규율화에 매달린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강도의 강화만을 통해 생산성의 증가가 실현될 수는 없다. 게다가 노동력이라는 제3의 생산요소 역시 당시 노동자의 열악한 물질적 상황으로 인해 장

66) Гимпельсон, советский рабочий класс, 261쪽.

기적이고 근본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기는 어려웠다. 하부조직의 보고가 말해주듯이, 가장 빈번한 노동규율의 위반으로 간주되던 결근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물질생활을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충분한 물질적 보상이 없이 이루어진 노동의 강화는 “노동자 국가”의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조직인 소비에트 노동조합은 볼셰비키 정권 하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 즉 노조는 노동조건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의 실시여부를 관리·감독했다. 기업단위로 조직된 동지·규율법정과 노조의 최하위 조직이었던 공장위원회가 작업장에서 실시한 노동통제 등은 노동자의 노동윤리를 감시하는 기구로 탈바꿈한 소비에트 노조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조의 변신은 노동자의 억압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를 앞당기는 산고(産苦)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21년 초에 크론슈타트에서 발생한 일부 노동자들의 볼셰비키 정권에 대한 저항은 내전시기에 실시된 노동규율화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볼셰비키 정권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으며, 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이들 통해 “노동자 국가”에 대한 어떠한 표상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은 국가에 대해 크론슈타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저항을 했는지, 저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이었던지, 노동자들의 저항은 본질적으로 반볼셰비키적이었는가 아니면 식량문제와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었는가 등은 이 글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이라 하겠다.

abstract

Bolshevik's policy of labor discipline(1918-1920)

Yun, Yong-Seon

After the 1st world war, the Soviet Russia confronted a economic crisis, partly from the revolution and the civil war, and partly from the Western Powers' intervention and blockades. Her economic crisis, related with the industrial situation, mainly resulted from two factors; reduction of working population and decline of labor productivity. The Bolsheviks, in order to secure labor force, imposed comprehensive disciplines to all labor population available, and, for raising the productivity of labor, introduced some renovations like bonus system. But this kind of physical incentive system on productivity must have had the limit from the beginning in their poor economic situation. And the Bolsheviks had to perform harsh labor related rules simultaneously.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he labor obligations and disciplines which had been introduced for securing laborers and for raising productivity was imposed and reinforced in the civil-war situation, especially in the light of labor-related legislation, the party leaders' viewpoint, each organ's activity — that is the trade union's — and punishments over every kind of violation.

The Bolsheviks pushed forward harsh labor legislation. They concentrated all their efforts in the reconstruc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They

did this through the so-called “Glavikism”, meaning the centralized organization and controls of industrial activity, rigid labor rules, watches and controls through “the comrade court”, organization of labor forces and all kinds of punishments — wage cut, break of food rationing, dismissal, slave labor, imprisonment and so on. Also, in the field of economy and administration, they steamlined all directions of authority in the military fashion. The reason is that the fate of the newborn Bolsheviks depended entirely on whether they overcame the civil war situation and how soon they revived the bankrupt economic situation. To survive the double war, the Bolsheviks had to tighten control of labors, under the name of labor policy.